

제211회 임시회

2003. 4. 22(화)

심 사 보 고

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조례안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
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

산업경제위원회
2003. 4. 21.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3년 4월 1일
- 회부일자 : 2003년 4월 1일

다. 상정 일자

○ 제211회 임시회

-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(2003. 4. 21) 상정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농정국장 김 재 욱)

가. 제안 이유

-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가 제정(조례제2676호, 2001.10.12) 되어 우리도의 우수한 농산물에 대하여 충청북도 추천 농특산물 상표사용 승인 사업을 추진하였으나
- 지역우수 농특산물의 육성을 위하여는 시·군에서 품목별로 공동상표를 제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여(농림부 권장사항, 농림업무평가시 적용) 시·군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본 조례를 폐지함

나. 주요 골자

-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 폐지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박 응 화)

-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여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여 승인한 조례로써
- 최근의 지역우수 농특산물의 상품인증 실태를 보면 시·군에서 품목별로 고유브랜드화하여 인증 상표를 제작 집중홍보 내지는 육성하는 추세이므로 시·군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충청북도에서는 본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- 무분별하게 각 시·군에서 농산물 상표를 제작 운영함에 따른 부질서 내지는 과다경쟁의 우려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 생 략 ”

5. 토 론 요 지 : “ 생 략 ”

6. 심 사 결 과 : “ 원안 가결 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 없 음 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 없 음 ”

9. 별 첨

◎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조례안

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87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년 월 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-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가제정(조례 제2676호, 2001. 10. 12) 되어 우리도의 우수한 농산물에 대하여 충청북도추천 농특산물상표사용 승인 사업을 추진하였으나

- 지역우수 농특산물의 육성을 위하여는 시·군에서 품목별로 공동상표를 제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여(농림부 권장사항, 농림업무평가시 적용) 시·군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토록 하고 본 조례를 폐지함.

3. 주요골자

-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 폐지

4. 의안전문 : 따로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따로 붙임

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조례안

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(조례 제2676호, 2001.10.12)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조례 시행당시 도지사가 승인한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권은 상표사용 승인 말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【지방자치법】

제15조(條例)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그 事務에 관하여 條例를 制定 할 수 있다. 다만, 住民의 權利制限 또는 義務賦課에 관한 사항이나 罰則을 정할 때에는 法律의 委任이 있어야 한다.